#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(시설급여)

| 계약당사자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이용자 (어르신) (갑) | 성 명 | (인) | 등 급 (인정번호) | 등 급 ( ) |
| | 생년월일 | 년 월 일 | 연락처 | 자택) |
| | 주 소 | | | |
| 제공자 (을) | 시 설 명 | 사랑지기어르신마을 | 시설종류 | 노인요양 |
| | 시설장 성명 | 김 일 경 (인) | 연락처 | 053) 801 - 9989 |
| | 주 소 | 경산시 원효로 28길 10 | | |
| 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 | 성 명 | (인) | 관 계 | '갑'의 ( ) |
| | 생년월일 | 년 월 일 | 연락처 | 자택)<br>이동전화) |
| | 주 소 | | | |
| 급여 계약 내용 | 급여종류 | 시설급여 | | |
| | 계약기간 | 년 월 일 ~ 년 월 일 | | |
| | 월생활비 | 원 / 30일 기준 | | |
| | 급여본인부담 | 원 / 월 | 20%, 12%, 8% 면제, 기타 | |
| | 입 금 | 농협 : 계좌 301-0146-1570-21 예금주 : 사랑지기어르신마을 | | |

1. 어르신이 어떠한 상태로 입원하시든 최선을 다해 편안히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.
2. 어르신께서 공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함께 생활할 수 없을 때는 강제 퇴원하게 됩니다.
3. 사랑지기 모든 시설과 기물 훼손 및 파손 시 보호자가 변상해야 합니다.
4. 사랑지기에서 제공되는 식사 외에 보호자들이 드리는 음식물은 원장의 동의를 구합니다.
5. 입원 시 귀중품 및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라며, 사랑지기에 맡기시지 않은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6. 서비스 실시 중에 직원의 과실이 아닌 본인 과실로 인한 상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(배상책임보험근거)

**※ 상기 어르신은 치유가 어려운 노인퇴행성 질환으로 불시에 임종에 이를 수 있음을 입원 시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, 입원을 결정함에 있어 질환 및 사망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상기 약정내용에 동의합니다.**

※ 본 계약서는 사랑지기 1부, 보호자 1부를 각자 날인 보관 합니다.

년 월 일

보호자 : (인)

사랑지기 원장 : (인)

**제1조 【 목 적 】**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**제2조 【 계약기간 】**

① **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**

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③ '을'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'갑'(또는 '병'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'갑'(또는 '병')은 이후 15일 이내에 '을'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
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'갑'(또는 '병'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
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
⑥ '갑'(또는 '병'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**제3조 【 입소 · 이용료 납부 】**

① **'갑'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.**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30일 납부하기로 한다.
(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
② '갑' (또는 '병'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.

③ **'갑'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_____ 로 한다.**

④ '갑' 또는 '병'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'갑' 또는 '병'이 별도 부담한다.

◇ 시설급여 (1일)

| 구 분 |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
| 요양급여 | 노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 | | | |
| | 노인요양시설(단기보호에서 전환) | | | |
| | 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 | 93,070 | 86,340 | 81,540 |
| | 노인요양시설(개정법) | | | |
| |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| | | |
| 비급여 | 상급침실 이용료 | | | |
| | 식재료비(1식) | 3,000 * 3식 = 9,000 (1일) | | |
| | 간식비(1회) | 1,000 | | |
| | 이/미용료등 | | | |

**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**

| 등급 | 총 액 | 본인부담 (20%) | 본인부담 (12%) | 본인부담 (8%) | 식비(3,000) 간식(1,000) | 본인부담금 총액(20%) | 본인부담 총액(12%) | 본인부담 총액(8%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2,792,100 | 558,420 | 335,050 | 223,370 | 300,000 | 858,420 | 635,050 | 523,370 |
| 2등급 | 2,590,200 | 518,040 | 310,820 | 207,220 | 300,000 | 818,040 | 610,820 | 507,220 |
| 3등급 | 2,446,200 | 489,240 | 293,540 | 195,700 | 300,000 | 789,240 | 593,540 | 495,700 |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| 구분 | 시설급여 | 재가급여 |
|---|---|---|
| 일반 | 20% | 15%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<br>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<br>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 12%,<br>8% | 9%,<br>6% |
| 기초수급권자 | 0% | 0% |

**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**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◇ 세부내역(30일 기준)

| 구 분 | | 금 액(원) | 내 역 |
|---|---|---|---|
| 총 계 | | 원 | |
| 요양보험 부담비용 | 소 계 | 원 | |
| | 요양급여비용(80%) | 원 | |
| 개인 부담비용 | 소 계 | 원 | |
| | 요양급여비용(20%) | 원 | |
| | 식사재료비/간식비 | 300,000 원 | 1식 3.000원*3 = 9,000<br>1일 간식비 = 1,000원<br>1일 10,000원x30일기준 |
| | 상급침실 이용료 | 원 | |
| | 약대 및 진료비 | 발생시 | |

**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**

**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**

**1) 기본원칙**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**2) 세부기준**

**(1) 식사재료비**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**(2) 상급침실 이용료**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·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**(3) 이·미용비**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**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**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**제4조 【 계약자 의무 】** '갑'과 '을' 그리고 '병'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'갑'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'을'의 의무

1. '갑'의 건강관리 협조
2. '갑'의 신변이상을 '병'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'갑'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'병'의 의무

1.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'갑'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'갑'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**제5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**

① '갑'의 해지

1. ‘갑’ 과 ‘병’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‘을’의 해지

1.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‘갑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**제6조 【 퇴소 】**

① ‘을’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‘갑’과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을’에게 제출하고 ‘을’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병’(또는 ‘갑’)에게 통보 후 ‘을’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
③ ‘을’은 ‘갑’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‘갑’이 지정한(또는 ‘병’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.

**제7조 【 입소물품 】** ‘갑’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‘을’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**제8조 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**

① ‘갑’의 면회시간은 매일 09:00시부터 21:00까지로 한다.
(단 ‘갑’과 ‘을’ 또는 ‘병’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).

② ‘갑’은 외출·외박시 사전에 ‘을’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‘을’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‘갑’이나 ‘병’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‘을’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
④ 외출·외박 중 ‘갑’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‘을’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**제9조 【 시설관리 】**

① ‘을’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‘을’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**제10조 【 건강관리 】**

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갑’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‘갑’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에게 별도 징수한다.

④ ‘을’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⑤ ‘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⑥ ‘을’은 ‘갑’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 시 지체없이 ‘병’에게 통보한다.
⑦ ‘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**제11조 【 시설물 배상 】**
① ‘갑’은 ‘을’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‘갑’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②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‘을’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【 위급시 조치 】**
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②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③ ‘갑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‘을’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‘병’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‘을’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‘을’은 ‘갑’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‘병’과 정산할 수 있다.

**제13조 【 임종 및 장례 】**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병’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장례는 ‘병’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
② 무연고자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을’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**제14조 【 식사 및 간식】**
① ‘을’은 1일 3식 및 간식을 ‘갑’에게 제공하며, ‘갑’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② ‘을’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‘갑’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 【 요양실의 배정 】** ‘갑’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‘갑’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

의견을 반영하여 ‘을’이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6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**
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② ‘을’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③ ‘갑’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 으로 한다.
④ ‘갑’은 ‘을’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⑤ ‘을’은 ‘갑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**제17조 【 기록 및 공개 】**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 【 배상책임 】**
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‘갑’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‘갑’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‘갑’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2. ‘을’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‘갑’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3. ‘갑’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4. ‘갑’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**제19조 【 이용계약서의 해석 】**
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**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.**